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76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㈜딥브레인에이아이 장세영(㈜딥브레인에이아이 대표이사)

2. 조치내용

□ **(금감원 원안)** ㈜딥브레인에이아이 증권발행제한 3월
장세영 과징금 1,200만원

□ **(원안의결)** ㈜딥브레인에이아이 증권발행제한 3월
장세영 과징금 1,200만원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증권신고서(매출) 제출의무 위반

○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세영은 2021.9.8. 50인(6개월간 누적 청약 대상자 52인*)에게 보통주 10억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음

* '21.8.24. 1인, '21.8.27. 1인, '21.9.8. 50인의 합계(전문가 및 연고자 제외 기준)

나. 근거법규

□ 증권신고서(매출)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7항, 제119조 제1항, 제132조 제1호, 제429조 제1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, 제120조 제1항 제1호, 제138조 제1호